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재난 발생 시 전력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명령 근거 신설〉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83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6.
3. 회부연월일 : 2026.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상 보호대상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현행 제도상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세대원 특성 기준 요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냉·난방 취약가구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염·한파와 같은 일상적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정책이 한시적 조치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또는 기후재난 발생 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고령자, 장애인 등 전력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감면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3(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①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정 범위의 전기요금 감면을 명할 수 있다.</u> <u>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현행	개정안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 시 전력 취약가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소요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면 범위, 감면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최근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냉·난방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을 강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이나, 소득 기준 외에 세대원 특성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약 28~32%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3년간 에너지바우처 요건 미충족 취약가구 규모]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초생활수급가구 (A)	1,788,309	1,884,089	2,013,319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B)	1,264,568	1,285,439	1,439,455
미충족 가구 (C=A-B)	523,741	598,650	573,864
미충족 가구 비율 (C/A)	29.3%	31.8%	28.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적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기존 지원 법령과의 중복 여부, 요금 감면 제도의 경직성 우려,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율 여부 및 제도 운영의 경직성 우려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체계와 약관을 바탕으로 이미 다수의 취약계층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며, 감면 대상을 법률에 직접 열거할 경우 신규 취약계층 발굴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간접지원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 통과 시 동일한 기후재난 상황에 대해 두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함.

둘째, 감면 명령에 따른 재원 조달의 불명확성 및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금 감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요금감면 결정시 사업자가 따르도록 강제 규정을 둔 반면(안 제17조의3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설계하였음(안 제17조의3제3항).

이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의 자발적 약관이 아닌 정부의 법적 명령으로 요금을 감면할 경우 국가의 관련 재정 보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반면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는 취약계층 요금할인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부담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사유로 현행 유지(수용 곤란) 의견을 제출하였음.

감면 비용을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므로²⁾, 재원 조달 주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명시된 감면 대상 간의 형평성 및 구역전기사업자³⁾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7조의3제2항은 감면 대상을 규정하면서 고령자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라는 제한 요건을 둔 반면, 장애인,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등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법률상 대상자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감면 대상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개정안 감면 대상과 현행 복지할인 지원 현황 비교]

개정안 규정 대상 (안 제17조의3제2항)	현행 복지할인 해당 여부
1. 고령자(55세 이상) 중 소득기준 이하 가구	해당 없음 (기초수급 등 별도 소득기준으로만 지원)
2.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에 한해 한정 지원 중
3.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에 한해 한정 지원 중
4. 가정폭력 피해자	해당 없음
5. 갱생보호 대상자	해당 없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재구성

2) 2025년 기준 현행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 규모는 7,141억 원에 달함.

3) 특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생산하여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을 겸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⁴⁾는 요금 감면 명령 대상에 일반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구역전기사업자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구역전기사업자도 복지할인 시행 대상이므로 입법 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째, 법률 용어의 자구 수정이 필요함.

안 제17조의3제4항은 세부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법령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본 개정안 심사 시에는 「전기사업법」에 감면 명령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요금 감면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적 입법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

4)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CHP)를 가동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특정 공급구역 내 소비자에게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